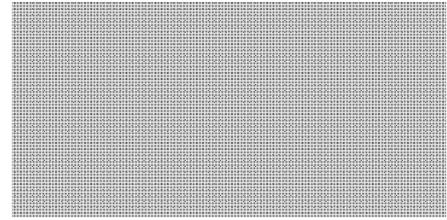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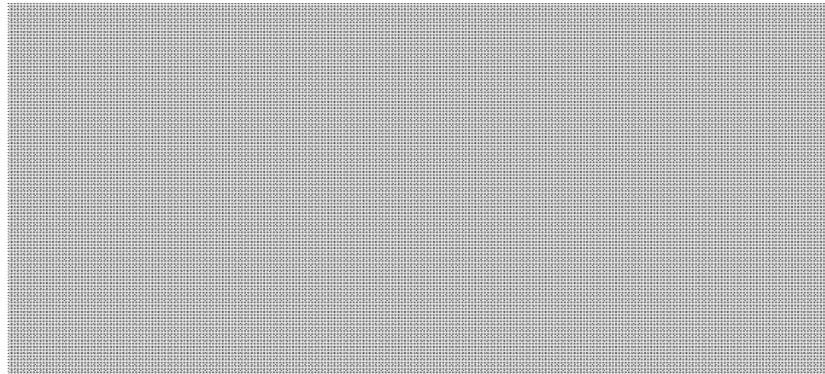


인 천 지 방 법 원
제 5 민사부
판 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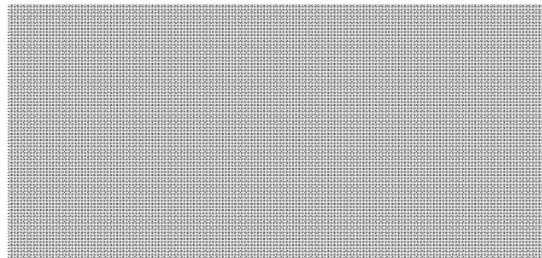
사 건 95가합16499 근로자지위확인등

원 고



피 고

축산업협동조합



변 론 종 결

1996. 4. 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

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을 제3호증(회원조합직원인사교류대상자통보), 을 제8호증(인사규정), 을 제9호증(인사규정시행요령)의 각 기재 및 증인 [redacted]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26조의 2 제1항은 “조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조합간에 직원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 위 시행요령 제25조 제1항은 “시·도 내 조합간 인사교류는 시·도 인사조정협의회 결정에 따른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, 피고 조합이 소속된 경인지구 인사조정협의회는 1995. 9. 12. 위 시행요령에 따라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[redacted]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전출하기로 결정하였고(위 결정으로 인한 인사교류 대상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0명이었다), 피고 조합은 위 결정에 따라 3일 후 원고에 대한 전출 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, 피고 조합의 전출 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1996. 4. 17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2-10

재판장 판사 이성룡 _

 판사 배형원 _

 판사 김하늘 _

